

부부공동 명의변경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

(중도금 대출 이전)

시티오씨엘 1단지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(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)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. 다만,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거하여 **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’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의 동의 하에 전매제한기간에도 증여가 가능**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에 아래와 같이, 부부 공동명의 변경 일정과 절차를 안내 드리오니 중도금 대출 부부공동 이전 명의 변경을 희망하시는 계약자께서는 해당 지정기간 내에 방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.

접수 장소	진행일시 / 장소	방문 사전 예약 안내
시티오씨엘 견본주택 (인천 미추홀구 아람대로 287번길 7)	21.08.19(목) ~ 08.22(일) 오전10시 ~ 오후4시	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오니 방문 전, 필히 견본주택(Tel. 032-831-1141)으로 연락하시어 사전에 방문시간을 예약 바랍니다. (미예약세대 및 당일예약 세대는 진행이 불가함)

■ 분양권 권리의무승계(명의변경) 절차 안내

절차	장소	구비 서류 등
01 증여 계약 체결	증여 : 직접 작성	* 양도, 양수인 간의 증여계약서 작성(홈페이지 내 양식 참조, 지분표시 必)
02 증여계약 검인	미추홀구청 (토지정보과)	*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 검인도장 득 * 대상자 : 양도인 및 양수인 * 구비서류 : 신분증, 인감도장, 분양계약서, 증여계약서
03 명의변경 진행 예약 (방문 3~5일 전에 미리)	모델하우스 (분양사무실)	* 032-831-1141(분양사무실)로 명의변경 진행 예약 ※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진행되지 않습니다.
04 명의변경 신청 및 권리의무 승계 계약	모델하우스 (분양사무실)	* 신청자 : 양도인, 양수인(양도인은 꼭 본인 방문) * 명의변경 신청서 외 서류는 분양사무실에 비치 * 구비서류 : 하기 참조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)
05 LH 전매동의 승인	LH 주택판매부	* 사업주체 → LH : 전매동의 신청 접수 * LH 전매동의 승인(약 3주 소요)
06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및 분양계약서 분출	모델하우스 (분양사무실)	* 수령자 : 양수인(분양계약자) 2명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

■ 명의변경 신청시 구비 서류

양도인(본인)		양수인(본인, 배우자)	
본인	* 분양계약서(아파트, 발코니확장, 옵션 등 일체) * 증여계약서(원본) 3통 (검인번호 동일 필수) * 인감증명서(부동산 매도용) 2통 / 본인발급용 * 주민등록등본 2통(주민등록번호 별표 불가) * 신분증, 인감도장	본인	※ 양도인 구비서류 포함 추가제출必 * 인감증명서 1통 / 본인발급용 * 주민등록등본 1통 * 신분증, 인감도장
		배우자	* 인감증명서 2통 / 본인발급용 * 주민등록등본 1통(분리세대 경우 2통) * 신분증, 인감도장
기타	* 양도인은 계약자 본인이 꼭 방문하여야 함 * 양도인이 양수인 대리로 오는 경우는 위의 전체 서류와 배우자의 인감증명서 1통 추가로 첨부(용도 : 위임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* 양도인과 양수인이 분리세대인 경우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2부 첨부		

※ '20.6.19 부동산 대책'으로 인해 인천 전지역 전매 제한구역 지정. 단, 전매 제한지역의 부부공동명의의 진행 시, LH(한국토지주택공사)에 전매 신청서와 전매 동의서를 작성(양도,양수인)하여 제출, 전매 동의서에 LH의 동의를 득한 뒤 (시공사 진행) 시공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. 만약, 양도-양수인의 사유로 인해 LH의 전매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.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